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1730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7. 3. 23.
판 결 선 고	2017. 5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9. 1.[1]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6,668,910원 중 무신고 가산세 771,58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,671,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) 소장에는 '2016. 9. 11.'로 기재되어 있으나, 갑 제1, 3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일자는 '2016. 9. 1.'이고, '2016. 9. 11.'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추징을 한 날이므로,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을 '2016. 9. 1.'로 정정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2. 9. 14.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토지 외 1필지 488.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취득한 후, 같은 해 10. 17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(이하 통틀어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 합계 30,130,000원(= 취득세 26,200,000원 + 지방교육세 2,620,000원 + 농어촌특별세 1,310,000원)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2. 11. 6.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,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, 2012. 11. 19. 위 30,130,000원을 전액 환급받았다.

다. 원고는 2012. 12. 21.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(그 중 면적 635.96㎡의 주택을 '이 사건 임대주택'이라 하고, 다른 하나는 면적 131.59㎡의 소매점이다)을 신축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6. 7.경 임대주택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, 원고가 2012. 11. 9.경 전액 환급받은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.59㎡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가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, 2016. 9. 1.경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 131.59㎡에 대한 취득세 등 6,668,910원[=취득세 5,862,970원(가산세 2,188,730원 포함) + 지방교육세 549,540원(가산세 182,120원 포함) + 농어촌특별세 256,400원(가산세 72,690원 포함)]을 부과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하고, 그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'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'이라 한다)한 후, 같은 달 11. 추징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6. 9. 19.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1,671,960원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[redacted]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2016. 10. 24. 기각되었고, 2016. 9. 27. 이 사건 처분에 따라 6,668,910원을 완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 내지 5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가 2016. 9. 11.경 이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, 원고로서는 그 납부의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. 9.경에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2년경부터 소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,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,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,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, 즉 ①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에 관하여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, 원고로서는 피고의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2. 11. 19.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은 이 사건 토지 중 2012. 12. 21.경 비주거 면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였어야 하는 점, ② 원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. 12. 31.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고, 당시 주거 면적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고를 하면서 비주거 면적인 131.59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6,882,890원을 신고·납부한 사실, ③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주거 면적과 비주거 면적을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이상,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,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비주거 면적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재판장 판사 심준보

판사 손호영

판사 박지숙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별지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

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7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

나.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40

제20조(신고 및 납부)

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,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[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]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

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장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■ 지방세기본법

제53조(무신고가산세)

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(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납부세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(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가산세)

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"과소납부"라 한다)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"초과환급"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1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2. 초과환급분 세액 ×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제57조(가산세의 감면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1조(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

①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(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임대사업자"라 한다)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(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,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(이하 이 조에서 "오피스텔"이라 한다)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(「주택법」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. 다만,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6

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<끝>